

2026년 파주시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모집공고

2026년도 파주시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4일
파 주 시 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부서	분야	인원	근무기간	비고
산림정원과	산림재난대응단	36명	2026. 10. 30. ~ 12. 18.	·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(한시적 계약)임 · 기관 여건·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무기간·일정 변경(가감)될 수 있음 · 체력검정 등의 결과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 변경 가능

2. 담당업무

- 산불예방 제도·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
- 산불진화·뒤통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
- 산불예방·대응 관련 현장업무의 보조
- 산림사업(위험수목 제거, 산사태 예방·복구, 산림병해충 방제 등) 업무보조 및 지원
-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제반 업무

3. 근로조건

- (1일임금) 96,560원 2026년 파주시 통상시급 12,070원
 - ※ 예산사정에 따라 조장수당 월 50,000원 내 지급가능
- (4대보험) 건강·장기요양, 국민연금, 고용, 산재보험 가입(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)
 - ※ 고용기관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기관에서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휴무일수 해당 임금은 미지급하며, 해당 휴무일은 주(유급)휴일로 대체 가능

- (근무시간)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을 원칙으로 근무
 - ※ 산발발생위험도에 따라 탄력 운영하며, 지역실정,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
 - 산발발생 시 근무시간 여부와 상관없이(휴일, 야간, 새벽 등) 반드시 출동**하여야 함
- (휴게시간) 휴게시간은 12:00~13:00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
- (초과근무수당 등)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(150%)하거나 시간급에 같음하여 8시간당 1일 휴가를 부여
- (유급휴일, 유급휴가·연차수당) 7일 동안의 소정근로일(5일) 개근 시 1회 유급휴일, 1개월 개근 시 1회 연차 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지급
 - ※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, 우천 등 근무여건이 어려울 경우 휴무하며 일당은 요구할 수 없음. 다만 당일 임금은 미지급이나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는 지급
- (주말·공휴일 상시근무) 업무 특성 및 근무순번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도 근무할 수 있으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함. ※ 토요일, 일요일은 평일 기준 일급으로 지급
- 파주시 산림보호센터(술이홀로 70)로 출·퇴근하여야 하며, 제공된 순찰차량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(파손, 분실) 등에 책임이 있음.
- 기타 근로조건은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」에 따름

4. 응시자격

가. 자격요건

- (연령, 거주)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7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자
- (건강, 성실)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
 - ※ 업무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체·정신적으로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(신체검사서 참고)
- (비상·상시근무) 토·일·공휴일 근무 및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근무지 도착이 가능하고, 근무기간 내 개인적 사유로 3일 이상 장기 공백 발생이 없는 자
- (기간제 공정채용 규정) 『파주시 공무원·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』 제23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「파주시 공무원·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」

- 제23조(채용 결격사유)**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 7. 1. 「민법」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 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경력 또는 학력,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11.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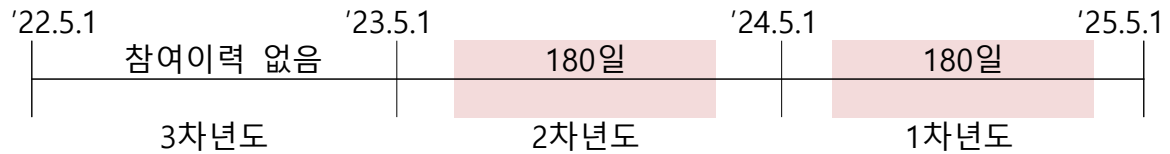
나. 참여제한

- **(중복참여)** 동일기간 2개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불가
- **(고교·대학 재학생)** 고교·대학(2년제·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) 재학생은 참여불가
다만, 대학(원)휴학생, 한국방송통신대학(원)·야간대학(원)재학생은 가능
- **(1세대 2인이상 신청)**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
- **(과거근태불량)** 과거 산림청 및 타 기관(지자체 등)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자나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및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. 과거 산림사업 참여 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자 간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자
- **(산림범죄이력)** 산지관리법, 산림재난방지법 등 산림관련 법령 범죄 경력이 있는 자
- **(심신허약자)** 청각, 간질, 정신질환,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상 이상이 있는 자
- **(위치정보수집)**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GPS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
- **(소득자산초과)** '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(토지·건축물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이 있는 자'는 참여를 배제하되 최초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,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고 일정비율 감점(20%) 후 채용가능
- **(반복참여)** :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를 배제하되 최초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,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고 일정비율 감점(5%) 후 채용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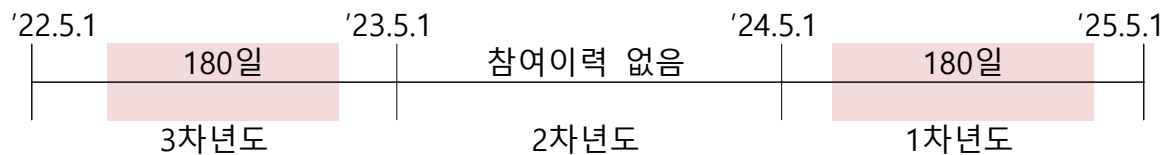
❖ 산정기준 예시(참여시작 예정일이 '25.5.1일인 경우)

-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
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



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(1차년도, 3차년도)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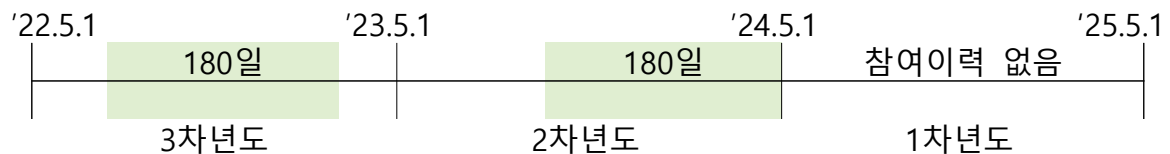


-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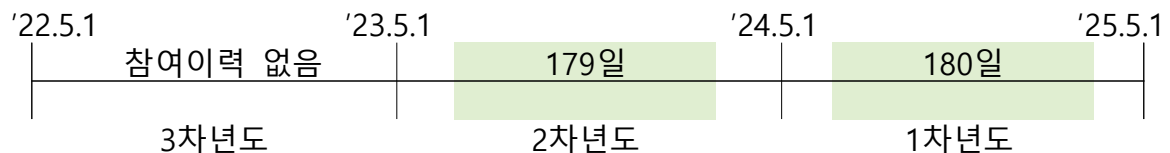
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('24.5.1) 후 365일이 지난 경우

*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

*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



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,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



다. 우대요건

- (1년이상 경력) 최근 3년간 1년이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,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 유경험자
- (부양가족) 부양가족이 있는 자
- (산림분야교육)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및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(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)
- (산림분야자격증)
 - 『산림보호법』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
 - 『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별표3에 따른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
- (국가유공자)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
 - 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득점에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

5. 선발방법 및 기준

가. 선발방법

- (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) 「2026년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」에 따라 모집인원의 64.1%까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

※ 다만, 체력검정 기준 미달 시 탈락

- ※ 취업취약계층 : 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
 - 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 등

「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0조제4항에 따라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 채용하며, 이를 위해 「산림청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종합지침」에 따라 1차 공고 시 취업취약계층만 우선 선발함.

- (일반선발)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후 잔여 모집인원에 대한 일반선발
 - ※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이 36명인 경우, 64.1% 23명까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가능하나, 모집결과 취약계층이 20명, 일반선발이 5명 모집되었다면, 재공고 시에는 11명에 대한 64.1%, 7명까지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우선선발하고 부족인원에 대해 일반선발 가능

나. 선발절차

○ (서류전형)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
○ (체력·실기검정)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관련 기술 검정

※ 체력검정 기준 미달 시 탈락, 혈압 3회 측정 후 기준 미달 시 탈락될 수 있음

※ 혈압측정 고혈압자(최고혈압 160mmHg 이상)는 체력검정 불가로 자동 탈락
(휴식 후 재측정 가능)

○ (면 접)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다. 선발기준

평가항목	배점	비고
총점	100	
■ (1년이상 경력) 최근 3년간 1년이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,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 유경험자	5	서류(20)
■ (부양가족) 부양가족이 있는 자	5	
■ (산림분야교육) 최근 5년간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및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	5	
■ (산림분야자격증) 『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, 나무의사,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	5	
■ 철봉 오래 매달리기	15	체력 및 실기 (60)
■ 10kg 모래마대 들고 앉았다 서기	15	
■ 15kg 등짐펌프 메고 800m 걷기	15	
■ 수동기어 운전	15	
■ 사업수행 능력	10	면접(20)
■ 성실성 및 참여의지	10	

○ (동점자 처리기준)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자 > 자격증 > 경력 순으로 선발

○ (최종합격) 응시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(20점)+체력·실기검정(60점)+면접심사(20점)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

※ 체력검정 미달기준 : 총점 21점 미만 혹은 종목별 3점 이하 탈락

※ 미달기준은 점수자들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조정 가능

6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가. 원서접수

- (접수기간) 2026. 9. 4.(금) ~ 2026. 9. 11.(금) 18:00 ※ 18시 이후 방문 접수불가
- (접수방법) 방문접수만 가능

신청서 교부 및 접수	주 소
파주시청 산림정원과 산림보호팀(☎ 031-940-4621)	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

- *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(붙임) 서식 인쇄사용 가능
- * 일요일·공휴일은 접수 불가
- * 필수서류 미제출 시 별도 안내 없이 서류 탈락 처리

나. 체력실기검정 및 면접

- (예정일시) 2026. 9. 21.(예정) 09:00 ~ 18:00
※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상세 일시·장소는 별도 통보
※ 점심 별도 지참 필요
- (면접장소) 산불대응센터 [파주시 술이홀로 64 (봉암리)]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9. 28.(월)(예정)

7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^{붙임1} 1부 (사진 1매 부착)
- ② 참여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)^{붙임2} 1부
- ③ 이력서^{붙임3} 1부
※ 과거 산림분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기재 필수(누락 시 경력 미확인으로 인해 서류 점수에 미반영 될 수 있음)
- ④ 위치정보활용동의서^{붙임4} 1부
- ⑤ 체력검정응시확약서^{붙임5} 1부
- ⑥ 주민등록등본 1부
※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(표기)본 제출
- ⑦ 취업용 신체검사서(병원·보건소 발급용) 1부
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일 통지 예정
- ⑧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, 교육이수증, 경력증명서,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국가 유공자확인원은 확인 불가), 표창장 사본 1부 (해당자)
※ 서류가점 또는 면접 시 평가에 이익이 될 수 있음.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자에게 있음
- ⑨ 취업 취업계약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자)
※ 취업취약계층 : 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 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 등
- ⑩ 공정채용 확인서(해당자)^{붙임6} 1부

8. 기타 신청자 유의사항

- 접수마감 이후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
-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 요청시 반환가능, 이후 폐기 예정
-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는 합격 취소 가능
-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 책임임
- 신체검사서 상 고혈압,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상 진화 활동에 위험성이 있는 자는 채용 취소 가능
- 채용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근무 경력자는 근무태도 및 능력이 면접 등에 반영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으로 충원 필요시 차점자 선발
- 직무수행 중 탈락 또는 포기자 발생으로 충원 필요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모집
(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)
- 최근 3년 내 산림사업 자발적 중도포기자는 면접 시 감점처리
-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·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,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산림정원과(☎031-940-4621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Ⅱ 주의사항 Ⅱ

- 파주시 산림재난대응단 모집은 매년 공개 모집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,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매년 사업 참여 근로자 선발은 반드시 공개모집하며,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써 매년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